

예비군대체복무 병역이행 안내문

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위해 대체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예비군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.

□ 대체역 병역의무 이행 과정



□ 예비군대체복무 제도

- 대 상 : 대체복무요원 복무 마친 해의 다음 해부터 8년 기간에 있는 사람, 예비군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
- 방 법 : 1~6년차까지 연차별 3박4일 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복무
 ☞ 7~8년차는 이월된 훈련시간 이수
 - 예비군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군 해당연차를 기준
- 통 지 : 소집일 30일 전까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송달
 - 병무청 누리집(병무민원-대체역-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 조회·발급) 조회 가능
- 임 무 :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(급식, 물품 등 업무보조)
 -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전환(별도 통지서 발송)

□ 병역이행 연기 등

- 질병 등의 사유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(병역법 시행규칙 제103호서식)와 증빙서류를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
 - 제출 : 우편 또는 병무청 누리집(병무민원-대체역-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신청서)
- 질병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·면제 신청서 (병역법 시행규칙 제108호서식)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
 ☞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 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면제 또는 해제
-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형(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) 선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 되니, 이 점 유의 바랍니다.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(☎ 1588-9090)로 문의바랍니다.